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2022. 1. 13.(목)



수원지방법검찰청 평택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유관기관 합동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설명회

□ 일시 : '22. 1. 13.(목) 16:00 ~ 18:00

□ 장소 : 평택상공회의소(6F) 및 Zoom 영상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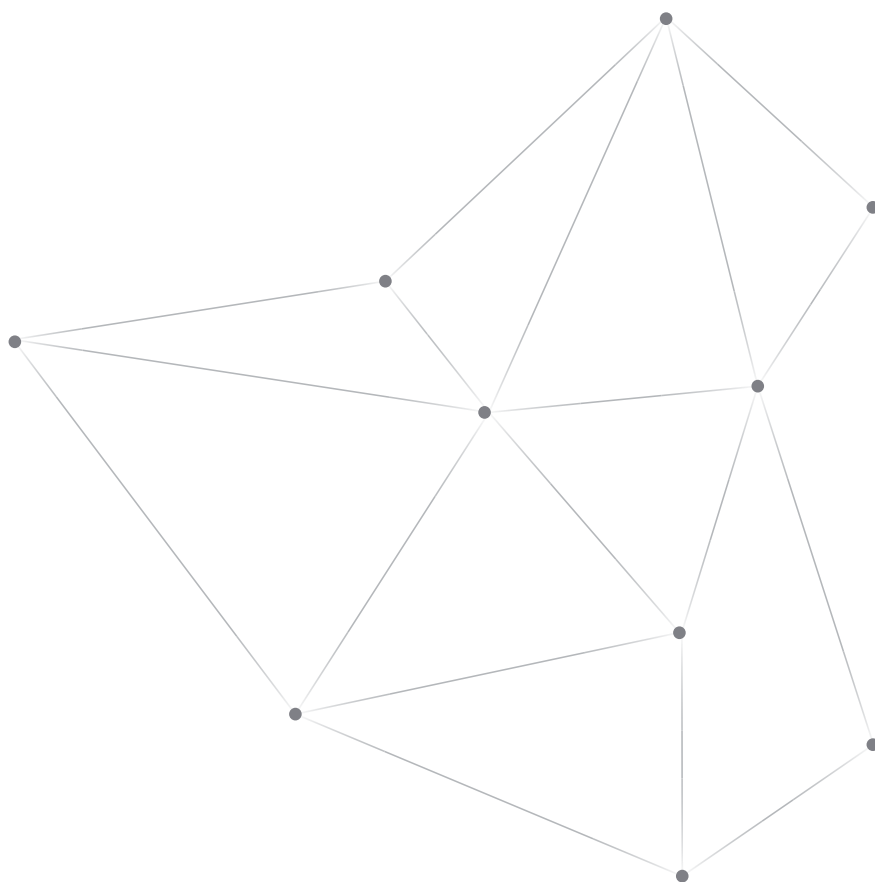
□ 주관(약칭)

○ 수원지검 평택지청,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 주요 내용 및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6:00~16:05 (5)	● 인사말씀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
16:05~16:10 (5)	●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
16:10~16:15 (5)	● 인사말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고광재 본부장)
16:15~16:20 (5)	● 인사말씀	평택상공회의소 (이보영 회장)
16:20~16:50 (30)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신우승 과장)
16:50~17:20 (3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상사례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영훈 검사)
17:20~17:50 (30)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김정훈 부장)
17:50~18:00 (10)	● 질의응답	-

인 사 말 씀



인사말씀

존경하는 기업인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국이지만, 힘찬 검은 호랑이의 해 초입에 여러분을 모시고 중대 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가운데서도 철저한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검찰, 노동청 그리고 공단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평택과 안성의 산업현장은 더욱 선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철저히 연구하여 엄중한, 그러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빛내주신 기업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그리고 지역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3.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박 윤 석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김덕곤입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건(2016년),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2020년)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2022. 1. 27.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이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 기업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기업경영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인 투자사와 국부펀드 등이 ESG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업의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ESG)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고 있는 거시적 흐름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가정책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사업주 여러분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산업현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 13.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김 덕 곤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고광재입니다.

오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윤석 수원지검 평택지청장님과 김덕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는 한 해 2,0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만여명이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어떤 법보다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어 일터 노동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을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법령 해설서, 현장 매뉴얼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현장지원단을 통한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요인 확인과 확인된 위험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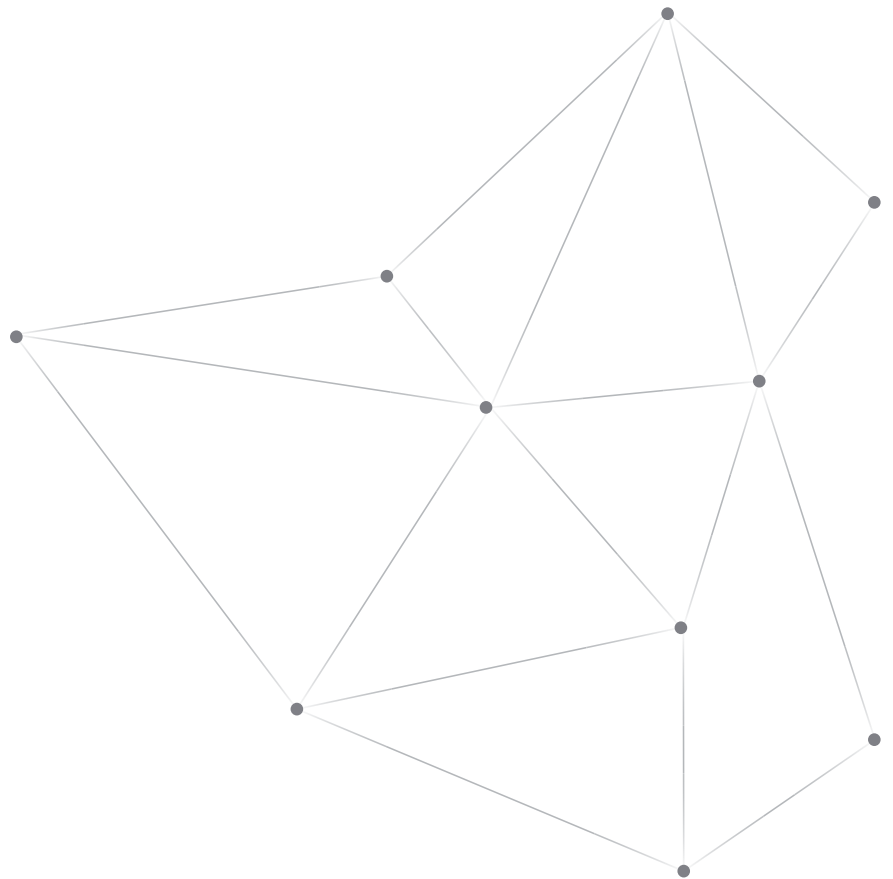
이제는 안전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터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해 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3.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고 광 재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과장 신우승)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Contents

-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 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Ⅲ 법령의 주요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 고용 여부 무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는 3년후 시행)
재해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5 -

I. 제정 배경 및 목적

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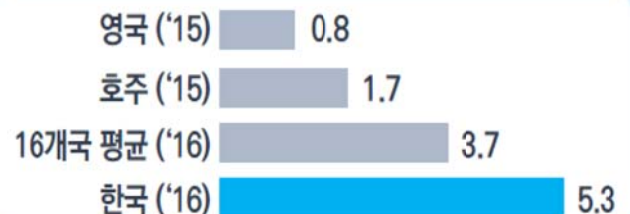
☑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만인율(‰)



- 2020년 12월 사고사망자 총 882명
- 2021년 8월 사고사망자(잠정) 총 610명

☑ 사고사망을 OECD와 비교('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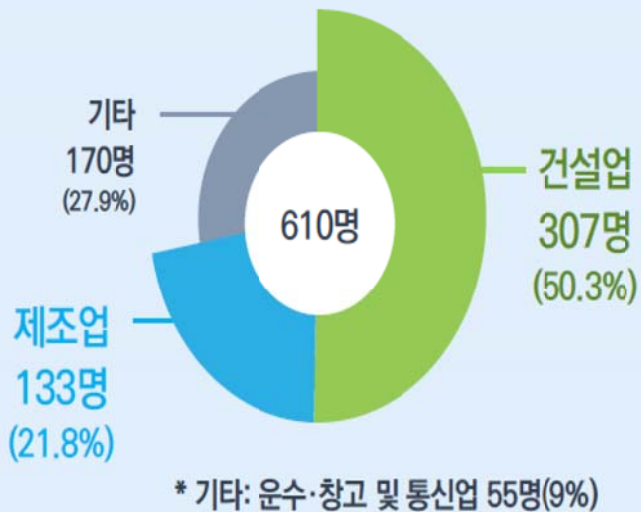
* 근로자 100,000명당 사고사망자 비율 (출처: ILO)



- 6 -

② 특히 **건설업**에서 사망사고 다수 발생

☑ **업종별 사고사망자 비중**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계 기준, '21년 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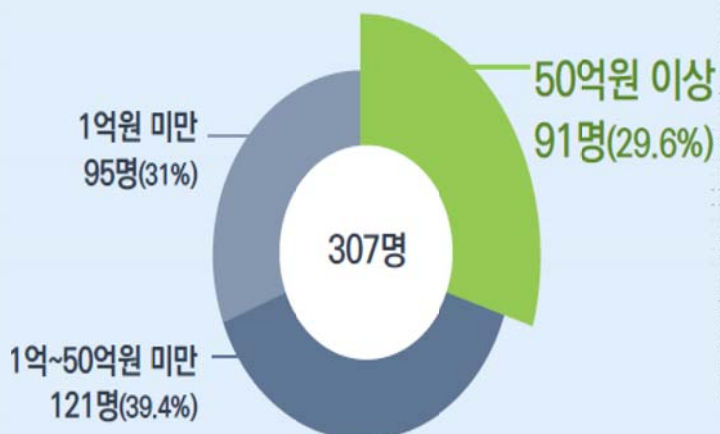


-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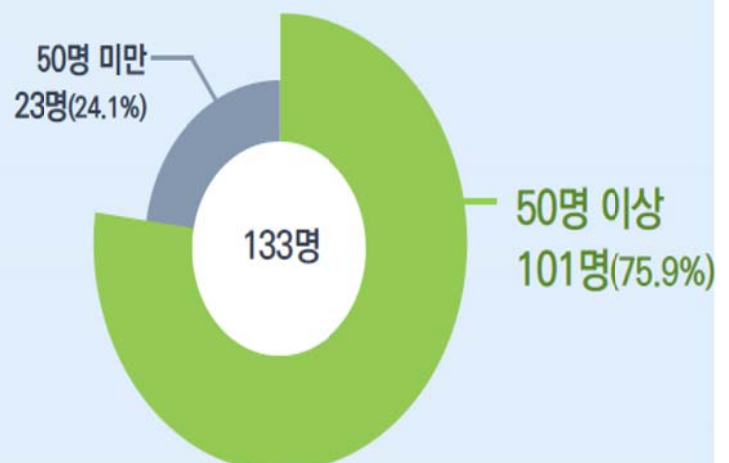
③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사망사고 다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계 기준, '21년 1~8월)

☑ **건설업 전체 307명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 91명



☑ **제조업 전체 133명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 1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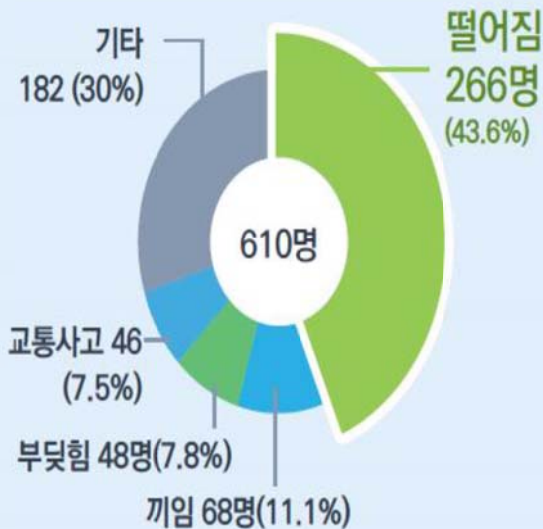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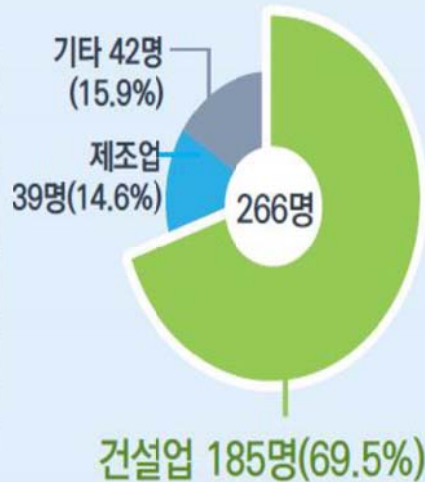
4 건설업종은 떨어짐, 제조업은 끼임 재해가 다수 발생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통계 기준, '21년 1~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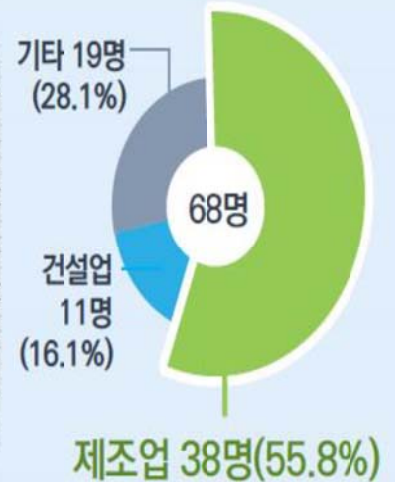
✓ 발생형태별 사고사망자(명)



✓ 떨어짐 재해



✓ 끼임 재해



- 9 -

5 안전관리에 대한 그간의 인식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팀이라고?
안전관리팀이 중요한 팀인지 생각해 본다.
이게 절호의 기회인지, 정리해고의 수순인지 따져본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공장도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안전관리팀과 달리 메인 부서 사람들은 활기가 넘친다.
그들에게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돌린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들이 네발자전거의 큰 바퀴라면
김부장은 자신이 보조 바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사람
법이 없었으면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 그 조직의 팀장. 그게 나다.

-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중에서



- 10 -

6 최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변화는 시대적 흐름

상장기업 ESG 공시의무 제도화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11 -

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 차원

법제정
목적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 하는 것

처벌규정의
목적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
-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

- 12 -

8 중대재해처벌법의 지향점



기업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즉, 경영책임자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라는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II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 위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예) 폭발성 물질 제조 시 방호조치 등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예) 5kg 이상 중량물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산업재해 예방 달성

- 15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자연인인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규정 - 다만,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영 제67조)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는 3년 후 시행)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 16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내용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주의 안전조치 ①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② 굴착·발파 등 위험 작업시 ③ 추락·붕괴 우려 있는 등 위험 장소에서 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①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 작업 ③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처벌수준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본사 수사 및 경영책임자 처벌
 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숙지·준수



Ⅲ 법령의 주요내용

①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 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14~24호)

- 19 -

②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종사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20 -

②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정의

경영 책임자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
* 예)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
 - 형식상 직위·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21 -

③ 법 적용범위 및 시행일

적용 범위

-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시행일) 2022.1.27.

적용 유예

-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시행일) 2024.1.27.

- 22 -

참고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과 산정

$$\text{상시근로자} = \frac{\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text{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산정 원칙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산정 대상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포함

- 23 -

④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위임

- 24 -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목표

- ☑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종사자의 생명·신체가 보호되고 있는 상태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구체화

경영 방침

- ☑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리더십,
지속적 개선 및 실행 의지,
이를 위한 경영정책 방향 등을 세부 전략으로 수립한 것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의 의무와 비교

산업안전보건법의 대표이사의 의무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승인 ⇒ **보고의무**

- 내용: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회사 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차이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직접적 이행 의무**

- 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대상: 건설회사의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
-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과태료 아닌 형사처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②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관리 전담 조직 구성·운영

안전 및 보건 업무 총괄 전담 조직

-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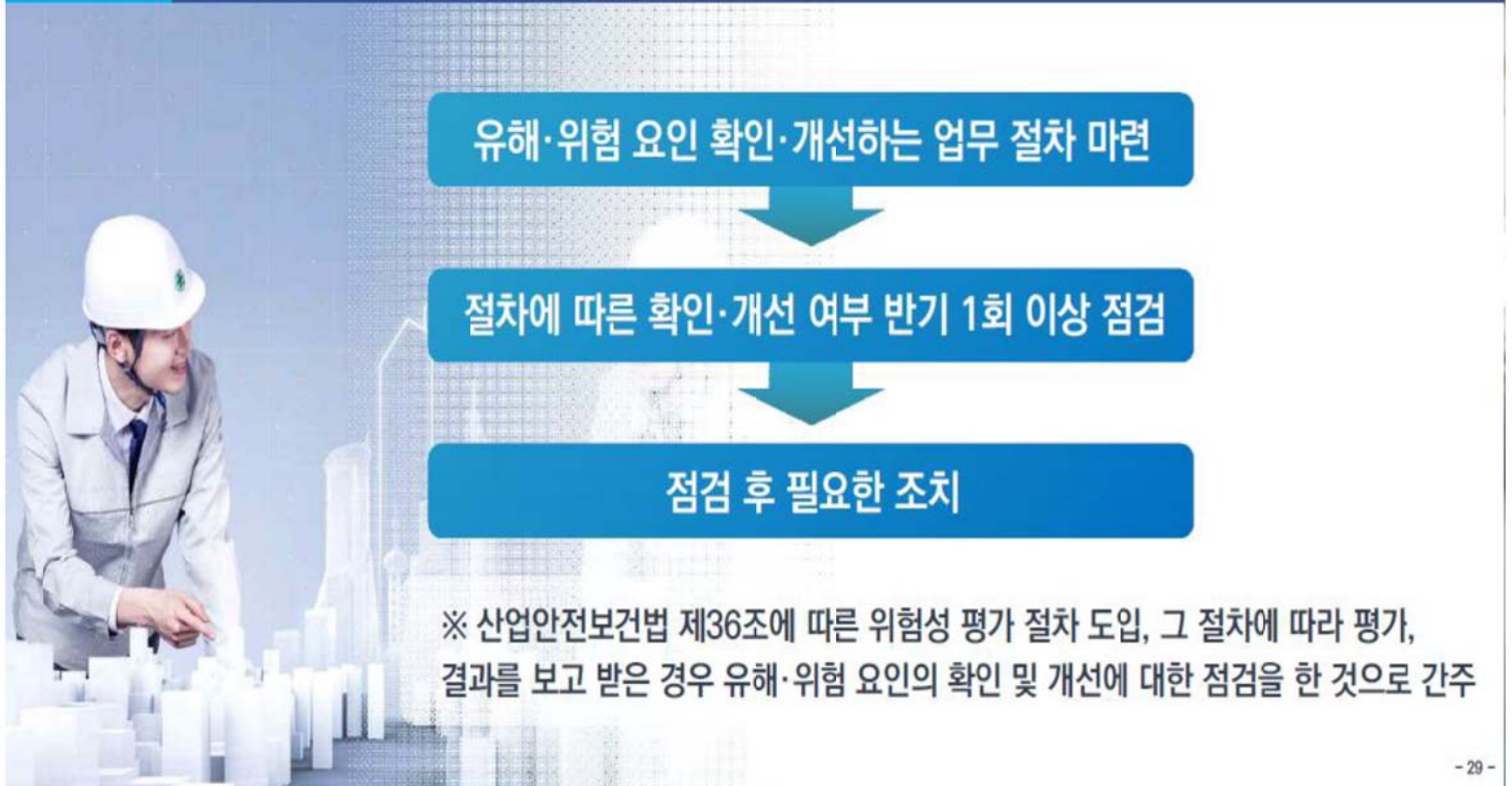
전담조직 설치 대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기업으로서

-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②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29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④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30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및 예산 부여
- ② 해당 평가 기준 마련
- ③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안전·보건관리 담당 인력의 역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생산공정 단위의 안전·보건관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총괄·관리

참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안법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①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⑧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관리감독자의 직무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산안법 제16조)

- ①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② 관리감독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③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④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⑥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⑦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안법 제62조)

-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②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의 중지
-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⑥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업무 수행시간 보장
-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배치할 수 있음
*예시: 기업규제완화법

| 주요 업종의 전문인력 배치기준

제조업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명 이상)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80억원 이상)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2명 이상
	보건관리자	(800억원 이상, 600명 이상) 1명 이상
그 외	안전보건담당자 * 5개업종 한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산업보건의 * 제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50명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 35 -

참고 안전관리자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3)

업 종	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	안전관리자 수
• 대부분의 제조업, 토사석 광업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 출판업,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 발전업	500명 이상	2명 이상
• 운수·창고업, 우편·통신업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 제외)	1,000명 이상	2명 이상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종사자 한정)	1,000명 이상	2명 이상
• 건설업	80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 '22년 7월 1일 이후: 60억원 이상 / '23년 7월 1일 이후: 50억원 이상	1명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중략~	~중략~
	1조원 이상: 11명 이상 ※ 매2,000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3,000억원 마다)1명씩 추가	11명 이상

- 36 -

참고

보건관리자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업 종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
-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 시행령 규정 22개 업종 등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이상
	2,000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은 의사 또는 간호사)
기타 제조업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이상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이상
	3,000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은 의사 또는 간호사)
건설업	800억원(토목공사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1명 이상 ※ 공사금액1,400억원 증가할 때 마다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추가될 때 마다 1명씩 추가

참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2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제24조)

- 소규모(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조언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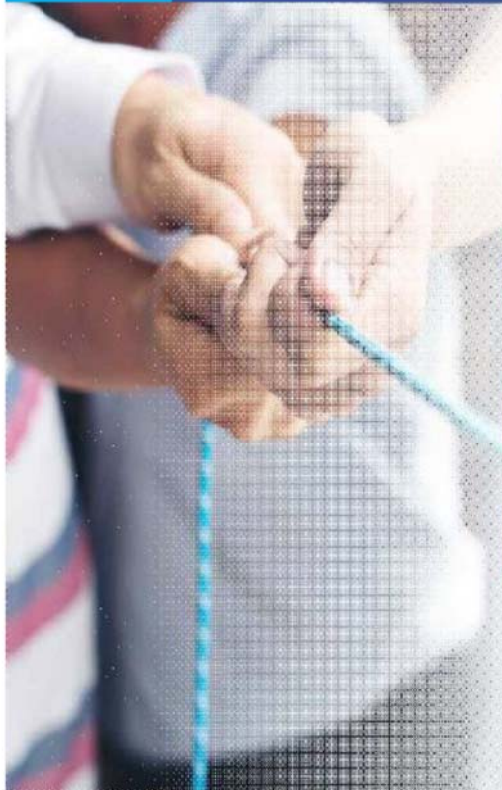
업 종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명 이상 50명 미만	1명 이상

산업보건의 (시행령 제29조)

업 종	상시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	50명 이상	1명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⑦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의견 청취

개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이행상황 점검 및 필요 조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거나 심의·의결을 한 경우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

- 39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조치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 ①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매뉴얼의 상의 조치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 40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



1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마련**

2

수급인 등의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3

건설·조선업: 안전·보건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

- 41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42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①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의 의미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경미한 산업재해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재해 조사와 결과분석

유해·위험 요인과 발생원인 파악

파악된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검토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

- 43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4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① 개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란 ?

-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인 시정명령 등

이행 대상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근거한 처분’

- 45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46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① 안전보건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고 있는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등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 점검 가능

이행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예산 등 추가 편성·집행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_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②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완료 후 지체없이 결과를 보고받을 것

미실시 교육 지체없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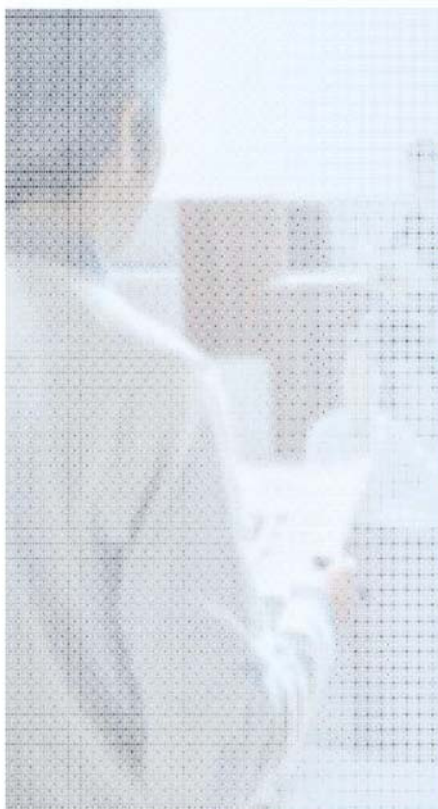
⑤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함

- 49 -

⑥ 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 이수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교육시간 및 비용	총 20시간 범위 교육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교육 실시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안전보건교육 진행 절차

분기별 대상자 확정 (고용노동부)	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통보 -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관 등 - 교육일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기 요청: 교육 실시 7일전까지	교육 의무 불이행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5천만원
--------------------------	---	---

- 50 -

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

경영책임자 처벌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형 확정 후 5년 이내 다시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죄를 저지른 경우
 - 2분의 1까지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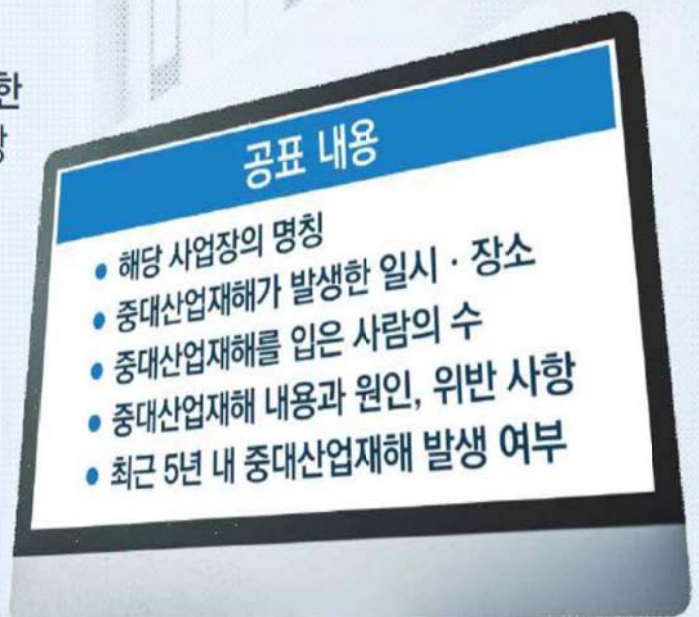
양벌규정

- ☑ 경영책임자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 부과(科)
 - 제6조제1항 위반: 50억원 이하의 벌금
 - 제6조제2항 위반: 10억원 이하의 벌금
-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

- 51 -

8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 **대 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 통보된 사업장
- ☑ 공표 전 해당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공표 내용 통지, 소명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30일 이상 기간 내)
- ☑ **방 법** 관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 공표 기간: 1년



- 52 -



안전·보건 의무를 간과하면?

- 53 -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기본적인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2020년 한 해에만 2,062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2007.8.30.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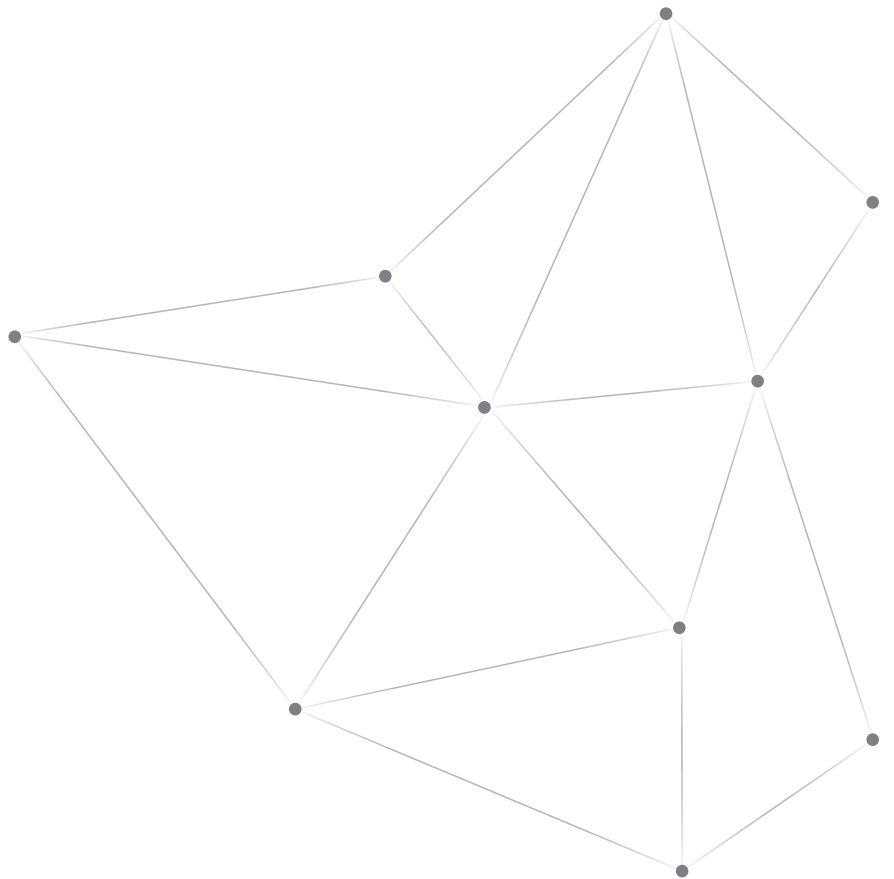
- 54 -

중대재해처벌법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상사례

(검사 이영훈)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분석

2022. 1. 13.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이영훈

차 례

1

개요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3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요

과거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타 행정법규 위반

앞으로는?

1. 업무상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타 행정법규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타 행정법규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사실관계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화재예방 및 피난 교육 실시, 화재감시인 배치 등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 중 발화된 불꽃이 지하 2층 전체에 발포된 우레탄 폼을 통해 건물 전체로 화재 확산, 38명 사망

피고인

발주처 대표자, 감리, 시공사 대표자, 하청업체 및 재하청업체 대표자

죄 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특정 -> 대표님?

법령해석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실관계

물류창고 신축현장의 시공사의 본부장이 현장소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었는바,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기 위하여는 시공사의 임원 현황, 예산 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정한 공사현장이나 공사가 아니라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누가 총괄적으로 대표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각 직위, 보고체계,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실행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특정 -> 하청업체의 경우?

법령내용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사실관계

하청업체의 경우 냉동설비 전문공사 업체로서, 수사 당시 냉동설비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 이외에 하청업체 대표이사에 대하여도 공사 지휘, 감독 여부 등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 이 사건 냉동설비 공사 현장의 공정 관리, 소속 직원 및 재하청업체에 대한 업무 지시, 관리 등은 위 현장소장이 전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소장을 행위자로 특정하여 기소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2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여부

시공사(원청)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물류센터 건축을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냉동냉장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등 일부 공사를 하청업체에 도급하였으나 시공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시공사로서 하청업체들의 각 공사 상황 공유, 공종별 작업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조율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공사현장 중 냉동시설 공사가 진행된 구역에 대해서는 하청업체가 소속 직원 및 재하청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공정을 조율하는 등 냉동시설 공사를 총괄하였는바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해당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통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일응 해당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3

안전·보건 확보의무 → 업무상 주의의무와 차이

업무상 주의의무

시공사에게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리고 대피훈련 등을 충실하게 실시하는 등 건물 전체에 관하여 존재하는 주의의무, 즉 근로자에게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을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리하는 작업장 내 근로자 등에게 신속히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하고, 준비된 대피로 등을 유해위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새로운 안전계획을 준비하여 이를 근로자 등에게 전파·교육·훈련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

→ 근거는?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3

안전·보건 확보의무 → 업무상 주의의무와 차이 :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 화재 발생 위험을 대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4조 제3호]'를 하였는지 여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시행령 제4조 제8호]' 등을 비롯,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검토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3

안전·보건 확보의무 → 업무상 주의의무와 차이 : 산업안전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호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 시공사에게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화기작업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훈련 실시, 안전보건표지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등'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검토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3

안전 · 보건 확보의무 → 업무상 주의의무와 차이 : 인명피해와 사이에 인과관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처음 불꽃이 목격된 지점, 지하 2층 창고 구역 내에서 불꽃과 연기, 플라이트 낙하 현상, 우레탄폼이 타는 냄새 등이 보이지 아니한 점, 통상적으로 산소용접 불꽃길이가 5cm 정도이며 동배관의 경우 배관 변형을 막기 위하여 장시간의 용접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용접작업 중 발화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지상 3층 승강기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뚱이 지하 2층 승강기 통로를 통해 떨어져 지하 2층 승강기 입구의 가연성 물질 내지 승강기 통로 내부나 계단실에 저류되어 있던 유증기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화재의 원인이 공소사실 기재 화재원인(창고구역 냉각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3번 냉각기에서의 용접작업을 전제로 하는 주의의무와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

→ 이에 따라 창고구역 냉각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기소된 기계설비 감리 직원, 시공사의 기계설비 안전관리책임자, 시공사로부터 냉동냉장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냉동냉장시설 판매 · 설치를 담당한 재하청업체 사업주 및 용접작업자에게 모두 무죄 선고

2.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쟁점 3

안전 · 보건 확보의무 → 업무상 주의의무와 차이 : 인명피해와 사이에 인과관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창고구역 냉각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었음을 전제로 기소된 기계설비 감리 직원, 시공사의 기계설비 안전관리책임자, 시공사로부터 냉동냉장설비 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냉동냉장시설 판매 · 설치를 담당한 재하청업체 사업주 및 용접작업자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안전 ·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유죄 可

3. 가슴기살균제 사건

사실관계

2011. 11.경부터 소아를 중심으로 발병한 원인불상의 폐질환.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총 6종의 가슴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정부에 피해를 신고한 자는 총 6,817명, 그중 사망자는 1,553명에 달함

피고인

제조사 대표자, 제조사 연구소장, 하청업체 대표자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3. 가슴기살균제 사건

쟁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제조물책임의 범죄화?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PHMG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은 점, 위 PHMG가 사용된 가슴기살균제 시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점, 위 PHMG의 흡입 시 위험성에 관한 정보들이 기재된 물질보건안전자료(MSDS)를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점 등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근거

3. 가슴기살균제 사건

쟁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제조물책임의 범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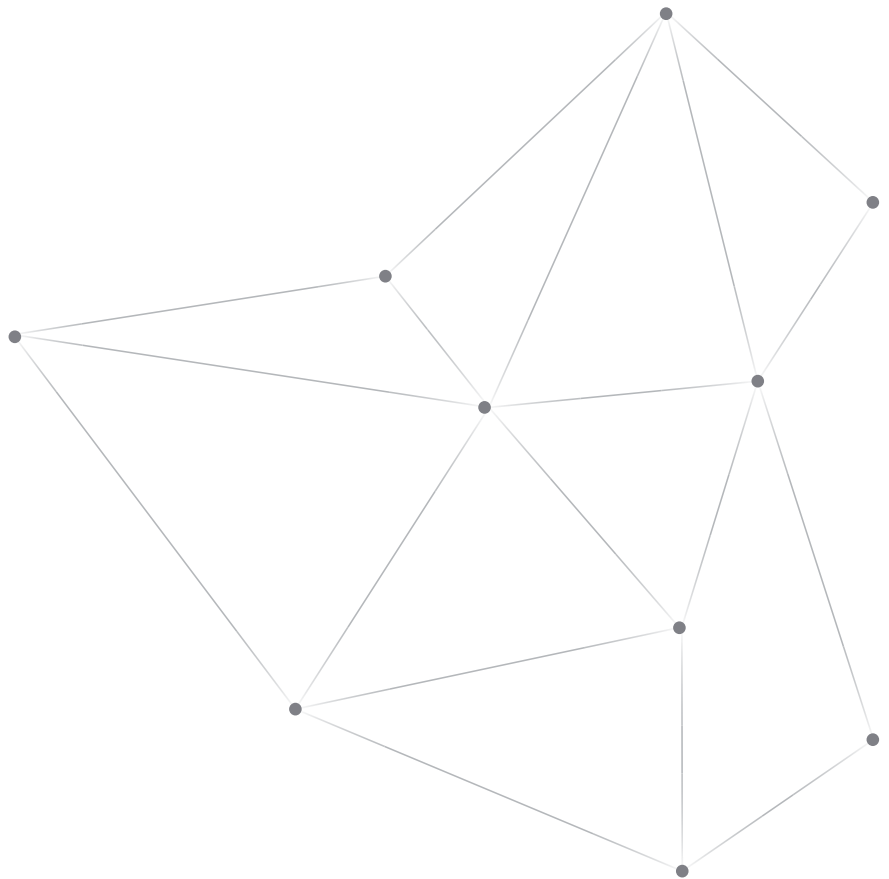
가상사례

동네 김밥집에서 특정 원료(단무지) 또는 제조물(김밥)의 이상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중대시민재해 중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을 원인으로 한 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예외규정 X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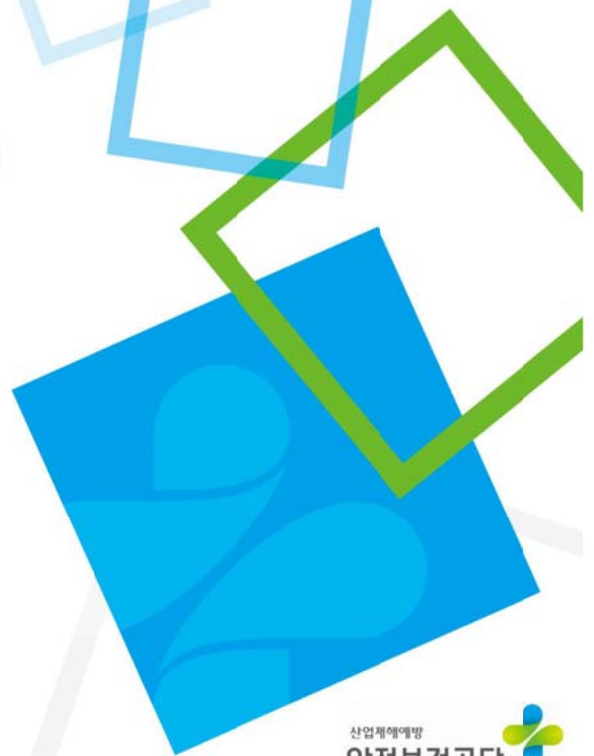
(부장 김정훈)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CONTENTS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1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정의

-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긴박한 또는 잠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 ·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체계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개별 기업의 기계·기구 및 공정 등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게 구축

☑ 기술 역량 및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업
→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

☑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
→ 공식적·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vs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	안전보건관리체계
동 기	처벌 회피 ⇒ 수동적	성과 달성 ⇒ 적극적
책 임	안전보건 담당자	경영자
평 가	외부점검(고용노동부 등)	자체 점검
목 표	처벌 회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

- ① '안전보건'을 경영방침의 **핵심가치**로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립니다.
- ② 작업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정돈합니다.
- ③ 주요 작업현장, 휴게시설에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위험한 기계·설비, 장소에 **안전표지판**을 부착합니다.
- ④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아차사고 신고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절차를 도입합니다.
- ⑤ 모든 구성원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격의 없이 논의하며, 논의결과를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⑥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사고사례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⑦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을 포상**합니다.
- ⑧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⑨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⑩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산업재해**를 **가정**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7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01

경영자 리더십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1. 경영자 리더십

key point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_ 1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 ✓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널리 알립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01. 경영자 리더십

실행방법



- ☑ 「안전보건 증진·유지」를 핵심적인 경영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및 고객에게도 안전 보건 경영방침 을 알립니다.
- ☑ '재해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기 평가
- ☑ 사업장 내 작업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관련 수급인과의 협의

11



01. 경영자 리더십

실행전략_2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합니다.
- ✓ 기업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정합니다.

12



01. 경영자 리더십

실행방법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담당자)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재편합니다.
- 중소기업은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훈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합니다.

13



01. 경영자 리더십

실행전략_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듭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14



01. 경영자 리더십

실행방법



- ☑️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
-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이 아닌, 모든 경영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화
-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사내 규정에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 규정
- ☑️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부여, 적극적 참여자에 인센티브 등 긍정적 분위기 조성

02

근로자의 참여



02. 근로자의 참여

key point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행전략 _ 1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안전보건 관련 참여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17



02. 근로자의 참여

실행방법

☑ 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 정보
예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홈페이지에 게시
-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 정보 공개

18



02. 근로자의 참여

실행전략_2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제안 활동 등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19



02. 근로자의 참여

실행방법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로자대표 참여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약체', '건설공사안전보
건 협약체' 등 활용

'작업 전
안전미팅(TBM)
도입

- 사업장, 부서, 현장,
공정 단위 운영

신고·제안
절차 마련

- 신고 및 개선방안 제안
• 익명성 보장

20



02. 근로자의 참여

실행전략 _ 3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분위기를 만듭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21



02. 근로자의 참여

실행방법

“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분위기 ”

“ 모든 구성원
참여 ”

- ☑ 신고·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불이익은 제거
- ☑ 정기적으로 조치결과 공개
- ☑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시간으로 인정
-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작업자 참여
- ☑ 하청, 파견, 공급·판매업체와 의견 교환

22

03

위험요인 파악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3. 위험요인 파악

key point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 위험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03. 위험요인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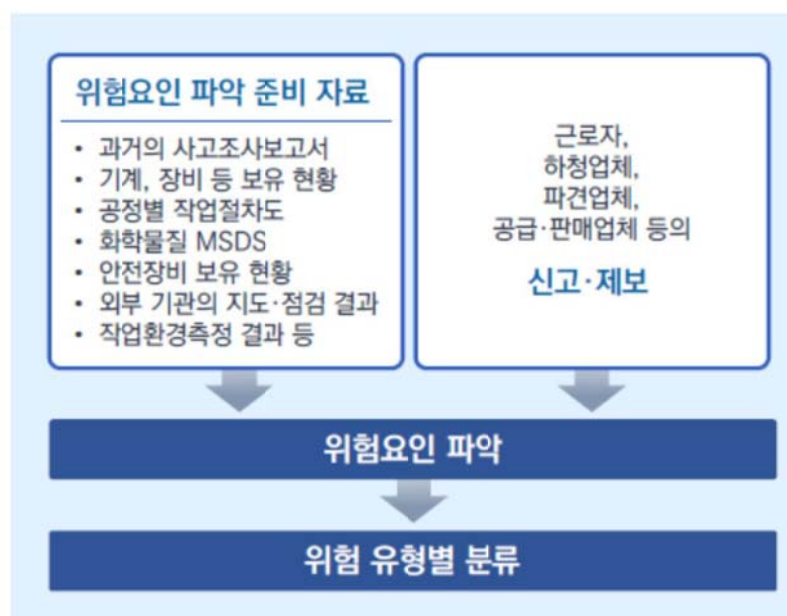
실행방법

- 경영자·관리자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 및 고객도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5



03.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파악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자료


26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_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 과거의 산업재해는 물론 아차사고까지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27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방법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사고 조사 시에는 안전보건 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28



03. 위험요인 파악

'아차사고'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

- 수차례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아차사고 발굴 절차 예시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_3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방법

-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위험 유무를 파악합니다.
-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합니다.

31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_4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합니다.
- ✓ 화학제품의 경우, 반드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확인합니다.



32



03. 위험요인의 파악

유해인자란?



화학적 인자

- ☑ 화학제품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 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CAS번호 확인 (www.msds.kosha.or.kr / MSDSinfo)
-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준수 여부

물리적 인자

- ☑ 소음·진동·방사선·기압·기온 등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생물학적 인자

- ☑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동물매개 감염인자 등 확인

인간공학적 인자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직무스트레스 등 확인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전략_5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합니다.





03. 위험요인 파악

실행방법

☑ 현장 작업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

재해유형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누출, 질식, 폭염 등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 끼임 재해

비계(위험장소)에서
거꾸집 설치 작업

→ 떨어짐 재해

건설현장의 경우
공정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파악

건설공정

터파기⇒흙막이⇒지보공⇒조립⇒기초바닥공사⇒철골 설치
⇒철근 조립⇒거꾸집⇒콘크리트 타설⇒마감⇒내부 인테리어

- ① (계획·설계단계)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설계자)
-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 ③ (일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
- ④ (작업 직전) 안전미팅(TBM)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35



03. 위험요인 파악

굴착기의 위험요인



- 충돌 및 협착
- 경사지 전도
- 자재 낙하

최근 5년간 118명 사망

36



03. 위험요인 파악

차량탑승형 고소작업대의 위험요인



- 차량의 넘어짐
- 탑승자의 떨어짐

최근 5년간 61명 사망

37



03. 위험요인 파악

타워크레인의 위험요인



- 설치상승해체 중 붕괴
- 취급 중량물 떨어짐

최근 5년간 61명 사망

38



03. 위험요인 파악

고소작업대의 위험요인



- 탑승자의 떨어짐
- 캐빈 상승 중 끼임

최근 5년간 45명 사망

39



03. 위험요인 파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위험요인



- 운전반경 내 충돌
- 차량의 넘어짐
- 정비 중 끼임

최근 5년간 43명 사망

40



03. 위험요인 파악

로울러의 위험요인



- 반경 내 충돌
- 넘어짐
- 끼임

최근 5년간 16명 사망

41



03. 위험요인 파악

콘크리트 펌프카의 위험요인



- 반경 내 충돌
- 차량의 넘어짐

최근 5년간 15명 사망

42



03. 위험요인 파악

지게차의 위험요인



- 보행자와의 부딪힘
- 운전자의 깔림

최근 5년간 151명 사망

43



03. 위험요인 파악

크레인의 위험요인



- 운반중량물 낙하
- 보행자와의 부딪힘

최근 5년간 98명 사망

44



03. 위험요인 파악

컨베이어의 위험요인



- 구동부 등 끼임

최근 5년간 56명 사망

45



03. 위험요인 파악

사출성형기의 위험요인



- 금형 사이 끼임

최근 5년간 12명 사망

46



03. 위험요인 파악

프레스의 위험요인



- 금형 사이 끼임

최근 5년간 10명 사망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key point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안전



49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방법

- ☑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 결정

위험요인
유형별 분류

- ☑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관리
- ① 위험기계 등 ②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 ③ 위험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④ 작업형태

위험성 평가

- ☑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 예측
- ☑ 중대성(위험성) 예측: 재해의 규모(재해자 수)와 사망, 중증 부상 및 질병 등 재해의 정도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위험요소별 우선순위 결정

50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_2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관리방안(통제방안)을 다음의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제거



대체



통제

개인
보호구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방법

효과가 가장 큼

-
-
-
-
-

효과가
가장 낮음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

- 구조변경 등 물리적 제거
- 위험성이 낮은 요인으로 대체
- 위험요인에서 작업자 격리
- 작업방법 변경
- 개인보호구 사용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방안
건설현장 개구부	■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 안전모·안전대 착용
끼임 위험 기계·기구	■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Lock Out, Tag Out' ■ 작업허가제 도입	■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유해화학물질	■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예: 메탄올 에탄올	■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 작업절차서 준수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 등 착용
인화성가스	■ 인화성 완화 * 예: 아세틸렌 LPG	■ 전기설비 방폭 조치 (점화원 관리) ■ 가스검지기·긴급차단 장치 연동 설치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작업절차서 준수 ■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밀폐공간	■ 밀폐공간 내부 기계·기구 제거 * 예: 내부모터, 외부모터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감시인 배치	■ 송기마스크

53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 _ 3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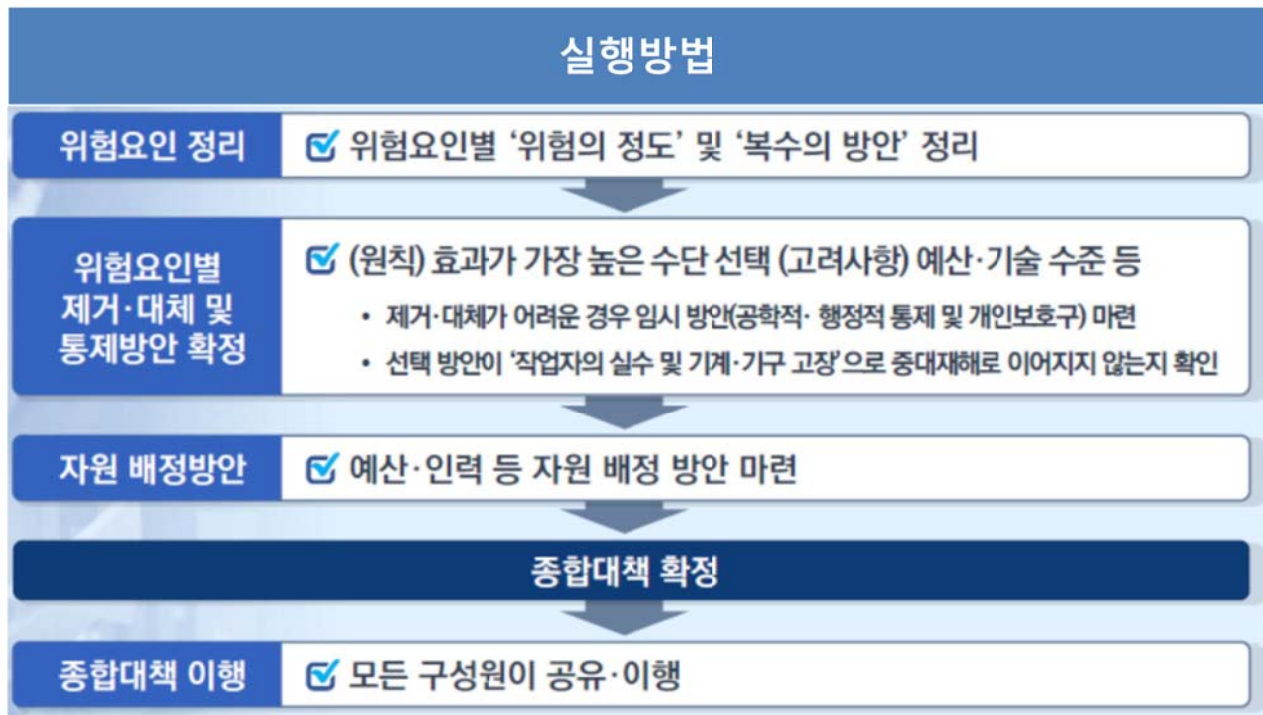
54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5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전략 _ 4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 ✓ 각 작업자는 구체적인 위험요인 제거·대체 또는 통제방안을 이해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합니다.



56



0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실행방법

모든
구성원

- ☑ 직무 관련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기법 교육
- ☑ 다양한 개인보호구의 착용 시점과 방법
- ☑ 안전보건관리체계 개념과 전반적인 절차
- ☑ 교육·훈련 내용은 사내 인트라넷 동영상 및 문서로 등록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활용 정기적 정보 제공
- ☑ 급박한 위험에 따른 대응훈련 주기적 실시

경영자·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필수 경영행위로 수행
- ☑ 사업장 내 위험요인별 통제방안을 숙지하고 지휘·감독

관리감독자

- ☑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활용, 기본 안전수칙 상기·점검

도급·용역·위탁

- ☑ 계약 시 사업장 위험요인별 대책을 설명, 이행 독려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key point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합니다.
- ✓ 사업장 단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59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방법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합니다.
-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다르므로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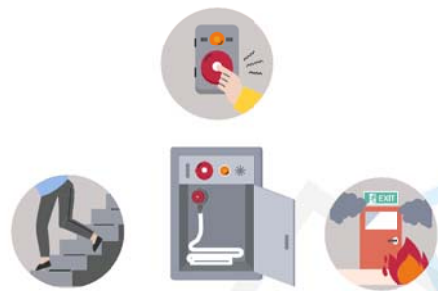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전략 _2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 급박한 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권한을 명확히 합니다.



61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방법

- 작성된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합니다.
- 조치계획에는 상황보고·전파(내·외부), 임시적인 위험요인 제거방안, 근로자 대피방안, 추가피해 방지방안 등을 포함합니다.

62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전략_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 비상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검증하며,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63



05. 비상조치계획 수립

실행방법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구성원별 역할과 대피방법을 **교육**합니다.
- 비상조치계획 이행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합니다.
- 사업장 별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합니다.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합니다.

64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행전략 _ 1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 계약에 앞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합니다.
- ✓ 계약할 때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합니다.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방법

-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 계약하지 않음
- ☑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 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도 미리 마련
- ☑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
 - * (예) 건설업: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포함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전략_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실행방법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소속 직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업체

판매업체

안전보건 경영 방침 고지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훈련 참여

☒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 보건의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개선

☒ 하청·파견·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 정보 제공, 소통·협력체계 구성

07

평가 및 개선



07. 평가 및 개선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실행전략 _ 1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71



07. 평가 및 개선

실행방법

본사, 사업부서별, 사업장별
안전보건 목표 설정

목표달성 여부 정기적 평가

모든 구성원에 공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

- | | |
|-------------------------|-------------------------|
| • 경영방침 게시건수(온·오프라인) | • 기계·설비의 정기검사 실시율 |
| •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 작업허가제 등 도입·개선 건수 |
| • 근로자의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건수 | • '재해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건수 |
|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 • 위험요인 대비 제거·관리 조치 이행률 | |

- ✓ 설정한 목표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점검하여 개선

72



07. 평가 및 개선

실행전략 _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 ✓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데 집중합니다.



60



07. 평가 및 개선

실행방법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체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 데 집중

점검팀 구성

- ☑ 주요 공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를 중심으로 구성

점검내용

-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관리 등 핵심요소 전반을 점검

점검 절차

- ☑ ① 면담 ② 서류확인 ③ 현장점검

특별점검

-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시 시행, 근본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아차사고에 대한 특별점검 시 징계 등 부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07. 평가 및 개선

실행전략 _ 3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60



07. 평가 및 개선

실행방법

평가·점검 통한 문제 발견

분기별(반기)별
조치계획 마련

경영자에 보고

필요 자원 배정·이행

☑ 평가 및 점검에서 발견된 문제는
분기별(또는 반기)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경영자는 필요한 자원을 배정하고 이행

☑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

76

4

요약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



감사합니다

발행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발행일	2022년 1월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
전 화	031)259-7149

2022-경기지역본부-8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발행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